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19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4. E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황성필

5. F

변론 종결2020. 5. 29.

판결 선고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을 대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T'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소외 J(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의 처이다. 피고 C은 '(주)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피고 D는 (주)K의 영업과장이다. 피고 E는 J의 동생이고, 피고 F과 L은 J의 후배이다.

나. 피고 C은 직원인 피고 D를 통하여 J에게 M 명의로 8,4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 절차를 대행하였으나, J이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에 사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 C은 그 상환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J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괜찮은 사람 명의로 경쟁업체인 H를 통하여 허위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그 편취 금원으로 M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교사하였다. J은 피고 C의 교사에 따라 피고 D와 상의한 후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결심하고, 2017. 5. 23.경 원고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E 명의로 N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달 24.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L 명의로 Q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체결하고, 1,44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D는 위 나항의 약정 체결과정에서 피고 E와 L의 신용도를 조회하여 주고, 하자 있는 서류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대출 실행방법을 알려주었다.

라. J은 2017. 5. 31.경 원고에게, 사실은 F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F 명의로 R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할부대출 약정서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7. 6. 1.경 2,4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마. 위 나, 라항과 같은 대출과정에서 원고는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금융을 신청받아 피고 E, L, 피고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대출금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입금받았고, 다시 피고 E, L, 피고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대출금을 2017. 5. 24. J에게 5,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대출 인센티브 145만 원을, 같은 달 26. 피고 B의 계좌로 1,440만 원을, 2017. 6. 1. 피고 B의 계좌로 2,49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90,7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바. 원고는 2017. 6. 26. 위 피고 F 명의의 대출 원리금 합계 25,288,439원을 P에 대위변제하였고, 2017. 12. 11. 위 L 명의의 대출 원리금 등 합계 13,601,652원을 P에 대위변제하였다.

사. 피고 C은 2018. 11. 13. 위 L 명의의 대출 원리금 등 합계 13,601,652원을 P에 변제하였고, 2019. 2. 26. 위 피고 E 명의의 대출금 잔액 42,188,886원을 O에 변제하였다.

아. J은 위 나, 라항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자. 피고 C은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교사죄로 기소되어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28.

확정되었다. 피고 D는 위 나,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된 후 2019. 4. 1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J에게 사기를 교사한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행동에 나선 자로서 J에게 사기행위를 교사 및 실행한 자이다.

피고 B은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여 남편인 J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은

자이다. 피고 E, F은 J이 원고를 상대로 허위의 대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력한 자이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입게 되었고, 향후 원고는 할부금융 대행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가 무너져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부담하는 총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90,750,000원 중 변제된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40,75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D는 피해자 O로부터 E 명의로 5,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L 명의로 1,440만 원을 각 대출받음으로써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P로부터 피고 F 명의로 2,49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J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였는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F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P에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구상권 등 어떤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F 명의의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가 어떤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위 피고들의 사기 및 사기방조 행위의 피해자는 각 캐피탈 회사로서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2017. 12. 11. 위 L 명의의 대출 원리금 등 합계 13,601,652원을 P에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C도 2018. 11. 13. 위 L 명의의 대출 원리금 등 합계 13,601,652원을 P에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P이 이중으로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P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 C, D 등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법정대위) 규정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민법 제480조 제1항은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임의대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채권자인 P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위 L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P에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 등 나머지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고, 위 대출금을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B은 J의 처로서 사업자 등록명의로 피고 B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은 계좌가 피고 B의 계좌인 사실, 피고 E는 J의 동생으로서, 피고 F은 J의 후배로서 각 J 등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어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E, F이 J 또는 피고 C과 D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J 등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 B, E, F이 위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구상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허용구